

動力資源部 告示〈第83-28号〉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개정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(동력자원부 고시 제83-25호) 중 일부를 石油事業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,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3년 11월 25일

動力資源部長官

다 음

제 1호(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정수금액)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다만, B-C油 및 프로판·부탄수입시의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의 납부일의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(1) B-C油 : 1 배럴당 0.3달러(비축기금 0.1 달러, 개발기금 0.1달러, 안정기금 0.1달러)

(2) 프로판·부탄 :

가. 장기低価수입분

1 메트릭톤당 188달러(비축기금+개발기금 : 88달러, 안정기금 : 100달러)

나. 현물시장 高価수입분

1 메트릭톤당 188달러(비축기금+개발기금 : 88달러, 안정기금 : 100달러)에 현물시장 高価수입 CIF가격과 장기低価수입가격과의 차이의 60%를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,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비축기금과 개발기금을 합한 금액 1 메트릭톤당 88달러를 정수하고, 안정기금을 아래기준에 따라 산출 징수

① 기준CIF가격보다 低価도입분 : 1 메트릭톤당 100달러

② 기준CIF가격보다 高価도입분

1 메트릭톤당 100달러 - (실도입CIF 가격 - 기준CIF가격) × 1.261

○실도입 CIF가격은 “LPG in World Markets”誌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 日本도착 최고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, 선적된 달의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, 프로판과 부탄중 한 유종의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공시가격의 프로판·부탄가격차이를 기준하여 산출 적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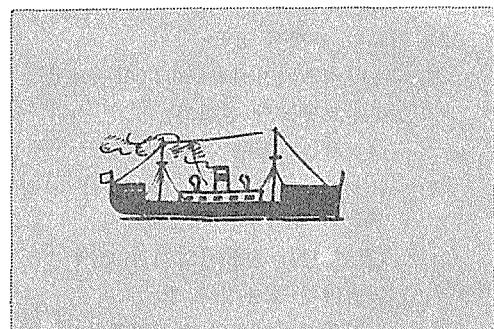
○기준CIF가격

- 精油社도입분 : 프로판 497,620원/톤, 부탄 496,910원/톤을 선적후 30일내의 기금납부일의 환율로 환산한 달러화 금액에서 188달러/톤을 차감하고 이를 1.261로 나눈금액

- 正友에너지(주) 도입분 : 프로판 264.80 달러/톤, 부탄 289.87달러/톤

부 칙

이 告示는 1983년 11월 25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1983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된 프로판·부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

商工部告示〈第83-43号〉

19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시행계획

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3년 12월 1일

商工部長官

나. 가격관리체계의 개선

○나프타유분가격의 점진적 자율화

- 양단지의 경쟁원리도입
- 국제수급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
- 麗川단지의 합리화유도

국제가격접근

다. 수입정책

I. 需給実績 및 展望

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 시행계획

(단위: 천톤)

구 분	공급능력(A)	需 要			供 給		자급률(C/B)	가동률(C/A)
		국내(B)	수 출	계	생 산(C)	수입		
'83	합성수지	1,009	864	152	1,016	909	107	105.0
	합성원료	350	754	-	754	329	425	43.6
	합성고무	125	110	12	122	87	35	79.1
	계	1,484	1,728	164	1,892	1,325	567	89.3
'84	합성수지	1,029	971	127	1,098	979	119	100.8
	합성원료	350	809	-	809	342	467	42.3
	합성고무	125	119	-	132	95	37	97.8
	계	1,504	1,899	140	2,039	1,416	623	94.1
증가율	합성수지	2.0	12.4	△16.5	8.1	7.7	11.2	△ 4.2
	합성원료	-	7.3	-	7.3	4.0	9.9	△ 1.3
	합성고무	-	8.2	8.3	8.2	9.2	5.7	0.7
	계	1.3	9.9	△14.6	7.8	6.9	9.9	△ 2.1

〈註〉 ○합성수지 : LDPE, HDPE, PP, PS, ABS

○합성원료 : Capro, AN, TRA/DMT, EG

○합성고무 : SBR, BR, ITR 기준

○국산우선사용 원칙의 견지 - 국산이 국내수요 주도

II. 시행계획

1. 석유화학공업의 경쟁력 강화

가. 원료대책

1) 나프타공급가격의 국제경쟁력 유지

2) 원료의 안정적 공급

○나프타비축기지건설(60,000Kℓ여전)

○부족원료공급의 원활화

-나프타관세경감 : 5% → 2%

-代替원료(Gas Oil, NGL)의 선택적 사용 유도

(관세인하, 석유사업기금 면제)

-나프타의 효율적 활용

• 저부가가치품의 수입전환유도

○수출용 원자재공급조달의 개선

-내수만으로 안정조업 가능시에 수출용 원자재부터 수입개방

라. 생산성 향상

○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, 공정개선을 통한 省자원화, 省에너지화사업 적극추진

○추진중인 사업

• HDPE공정개선 등 21개 사업

-투자규모 : 내외자 약 525억 원

마. 구조개선

○궁극적으로 석유화학공업과 精油工業의 결합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단지별 경영주체의 구축

○ 전후방 계열기업 간의 결합을 단계적으로 추

진

- 한양화학 - 한양전기화학의 합병완결

○ 경쟁력없는 국내시설의 해외이설추진

2. 장기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

가. 시설확충방향

○ 정부주도에 의한 석유화학공업단지 단위의

일괄 동시건설추진지향

○ 고부가치품목으로서 내수기반이 확고한

품목은 국내공장신증설로 자급율 제고

- 경쟁력위주로 개별적 선별추진

- 국내수급 및 단지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

나. 추진중인 공장건설사업

사 업 명	사 업 업 체	규모(천톤/년)	소 요 자 금(백만원)			건 설 기 간	비 고
			내 자	외자(천 \$)	계		
B T X 제조공장	(주) 油 公	250	93,264	43,750	127,653	82.8-85.7	계속사업
S M "	湖南에틸렌(주)	80	14,300	15,000	26,000	83.8-86.10	"
P S "	東洋나이론(주)	30	11,310	10,403	18,800	82.6-85.8	"
P V C "	(주) 럭 키	50	8,039	3,374	10,569	83.2-84.12	"
A B S "	"	25	6,550	4,125	9,850	83.1-84.2	"

다. 해외투자진출추진

○ 원료확보면에서 산유국에 진출이 유리한 분

야

- 국제경쟁력 취약분야
- 가공도가 낮은 기초원료 및 중간제품

○ 추진중인 사업

- (주) 럭키 : 사우디아라비아 (VCM, PVC)

- 한국카프로락탐(주) : 인도네시아 (카프로락탐)

- 대성메탄올공업(주) : 방글라데시 (메탄올)

라. 수급관리의 과학화

- 산업연관분석 실시 (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주관, KIET 협조)

動力資源部 告示(第83-29号)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告示개정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 (動力資源部 告示 제83-25호) 중 일부를 石油事業法시행령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,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3년 12월 13일

動力資源部長官

다 음

제1호 (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)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石油 1 배럴당 미합중국통화 1.5 달러 (비축기금 0.7달러, 개발기금 0.1달러, 안정기금 0.7달러)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이告示는 1983년 12월 1일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